

화순센터 모아엘가 트레뷰 입주자모집공고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1.11.16.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 2021.10.29.부터 KB모바일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하여 청약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화순센터 모아엘가 트레뷰」 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전시관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주택전시관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화순모아엘가.com)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순센터 모아엘가 트레뷰」는 고객에게 분양 상담전화(☎061-375-5557)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증가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전시관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는 경우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향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무순위/등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 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이 불가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콜센터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센터 모아엘가 트레뷰 문의전화 : 061-375-5557 홈페이지 : 화순모아엘가.com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청약콜센터 '청약Home' 홈페이지 : www.applyhome.co.kr
---	---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11.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남도 화순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1.)** 현재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순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 부임 불인정
- 단독 세대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불인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 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O	O	O	O
APT 무순위 / 잔여 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공급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공급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Home」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1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화순모아엘가.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 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08.11.)'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부적격 통보일로 7일의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해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전매제한 없음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 10% 납부 후 전매 가능하며 전매 가능일자는 사업주체가 별도 통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 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체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공급금액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 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2.08.22.(월)	2022.08.23.(화)	2022.08.24.(수)	2022.08.30.(화)	2022.09.01(목) ~ 2022.09.08(목)	2022.09.14(수) ~ 2022.09.16(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10:00 ~ 16:00)	주택전시관 방문 계약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사 주택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주택전시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Home'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화순군 도시과 - 32350호(2022.08.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3번지 일원

■ 공급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32층, 3개동, 총 341세대 중 일반분양 341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특별공급 174세대 : 일반(기관추천) 33세대, 다자녀가구 33세대, 신혼부부 67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33세대 포함]

■ 입주 예정 시기 : **2025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 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주택	2022000537	01	84.2474A	84A	84.2474	29.1509	113.3983	51.3382	164.7365	19.0257	124	12	12	24	3	12	63	61	4
		02	84.4009B	84B	84.4009	28.7886	113.1895	51.4317	164.6212	19.0604	91	9	9	18	2	9	47	44	3
		03	84.6635C	84C	84.6635	28.1642	112.8277	51.5918	164.4195	19.1197	126	12	12	25	3	12	64	62	4
합계											341	33	33	67	8	33	174	167	11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 면적임.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 형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30일 이내	2023.01.20	2023.08.20	2024.01.20	2024.06.20	2025.01.20	2025.06.20			
84A	101동 2라인	1층	2	51,841,000	310,859,000	362,700,000	20,000,000	16,270,000	36,270,000	36,270,000	36,270,000	36,270,000	36,270,000	36,270,000	36,270,000	36,270,000	108,810,000
		2층	2	51,841,000	318,859,000	370,700,000	20,000,000	1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37,070,000	111,210,000
		3층~4층	4	51,841,000	328,859,000	380,700,000	20,000,000	1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114,210,000
		5층~10층	12	51,841,000	337,859,000	389,700,000	20,000,000	18,970,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116,910,000
	101동 3라인	11층~20층	20	51,841,000	340,859,000	392,700,000	20,000,000	1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117,810,000
		21층~차상층	22	51,841,000	347,859,000	399,700,000	20,000,000	1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119,910,000
		최상층	2	51,841,000	419,859,000	471,700,000	20,000,000	2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141,510,000
	102동 2라인	1층	2	51,841,000	308,859,000	360,700,000	20,000,000	1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108,210,000
2층		2	51,841,000	316,859,000	368,700,000	20,000,000	16,87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110,610,000	

주택 형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30일 이내	2023.01.20	2023.08.20	2024.01.20	2024.06.20	2025.01.20	2025.06.20	
		3층~4층	4	51,841,000	327,859,000	379,700,000	20,000,000	1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113,910,000
		5층~10층	12	51,841,000	335,859,000	387,700,000	20,000,000	1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116,310,000
		11층~20층	19	51,841,000	338,859,000	390,700,000	20,000,000	1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117,210,000
		21층~차상층	19	51,841,000	345,859,000	397,700,000	20,000,000	19,770,000	39,770,000	39,770,000	39,770,000	39,770,000	39,770,000	39,770,000	119,310,000
		최상층	2	51,841,000	417,859,000	469,700,000	20,000,000	2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140,910,000	
84B	101동 1라인	1층	1	51,936,000	322,764,000	374,700,000	20,000,000	17,47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112,410,000
		2층	1	51,936,000	330,764,000	382,700,000	20,000,000	1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114,810,000
		3층~4층	2	51,936,000	341,764,000	393,700,000	20,000,000	19,370,000	39,370,000	39,370,000	39,370,000	39,370,000	39,370,000	39,370,000	118,110,000
		5층~10층	6	51,936,000	350,764,000	402,700,000	20,000,000	2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120,810,000
		11층~20층	10	51,936,000	353,764,000	405,700,000	20,000,000	2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121,710,000
		21층~차상층	11	51,936,000	361,764,000	413,700,000	20,000,000	21,370,000	41,370,000	41,370,000	41,370,000	41,370,000	41,370,000	41,370,000	124,110,000
		최상층	1	51,936,000	433,764,000	485,700,000	20,000,000	28,57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48,570,000	145,710,000
	102동 1라인	1층	2	51,936,000	323,764,000	375,700,000	20,000,000	1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112,710,000
		2층	2	51,936,000	331,764,000	383,700,000	20,000,000	1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115,110,000
		3층~4층	4	51,936,000	342,764,000	394,700,000	20,000,000	1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118,410,000
	103동 5라인	5층~10층	12	51,936,000	351,764,000	403,700,000	20,000,000	20,370,000	40,370,000	40,370,000	40,370,000	40,370,000	40,370,000	40,370,000	121,110,000
		11층~20층	19	51,936,000	354,764,000	406,700,000	20,000,000	2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122,010,000
		21층~차상층	18	51,936,000	362,764,000	414,700,000	20,000,000	21,470,000	41,470,000	41,470,000	41,470,000	41,470,000	41,470,000	41,470,000	124,410,000
		최상층	2	51,936,000	434,764,000	486,700,000	20,000,000	2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146,010,000
84C	101동 4라인	1층	4	52,098,000	312,602,000	364,700,000	20,000,000	1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109,410,000
		2층	4	52,098,000	320,602,000	372,700,000	20,000,000	17,270,000	37,270,000	37,270,000	37,270,000	37,270,000	37,270,000	37,270,000	111,810,000
	102동 3라인	3층~4층	8	52,098,000	330,602,000	382,700,000	20,000,000	1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114,810,000
		5층~10층	24	52,098,000	339,602,000	391,700,000	20,000,000	1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117,510,000
	102동 4라인	11층~20층	38	52,098,000	342,602,000	394,700,000	20,000,000	1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118,410,000
		21층~차상층	44	52,098,000	349,602,000	401,700,000	20,000,000	2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120,510,000
	103동 3라인	최상층	4	52,098,000	421,602,000	473,700,000	20,000,000	2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142,110,000

■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상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주택의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마감재 추가선택품목/가전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 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 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 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위세대, 모형물과 공급안내문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2	2	2	6	11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2	1	2	5	
	국가유공자 등	2	2	2	6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2	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2	1	2	5	
	중소기업 근로자	2	2	2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	9	12	33	
신혼부부 특별공급		24	18	25	67	
생애최초 특별공급		12	9	12	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2	3	8	
합 계		63	47	64	174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한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구 분	내 용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중복청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한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li style="padding-left: 20px;">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선정 = 부적격, 예비 무효 <li style="padding-left: 20px;">③ 특별공급 당첨(예비당첨) + 특별공급 신청 후 낙첨(신청 이력) = 당첨자 부적격(예비 무효), 낙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 신청 시 무주택 확인서 등으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분리세대 포함)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소명 기간(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해당 추천기관	연락처
장애인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4
	전라남도청 장애인복지과	061-286-5623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광주지방 보훈청 복지과	062-975-6702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중소기업 근로자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62-360-9148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 수에는 태어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순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 미성년 자녀 수	40	미성년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녀 4명	35	
		미성년자녀 3명	30	
(2) 영유아 자녀 수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3) 세대 구성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가족	5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6) 입주자 저축가입 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6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순군)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순군)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추첨제, 30%)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 기준 120% 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가구원 수 적용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근무 월수)		• 상기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
	근무 월수	•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
사업자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
	근무 월수	•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순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 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의 2 나목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혼인 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33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1.01.16.)]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 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순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화순군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요함.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 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 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 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수에는 미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 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단독지분을 공유로 상속받은 경우와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만큼의 면적으로 산정함.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만큼의 면적·가격으로 산정함.
10.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함)
 - 청약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 세대 추가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 접수결과 미달 발생(미분양 주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 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 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 당첨자 계약 ②	잔여 세대		잔여 세대 추가계약 ①	주택 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 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 소유
B 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 소유 / (나) 주택 소유
C 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	② 주택 소유 / (가), (나) 주택 소유 아님
D 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	② 주택 소유 / (가) 주택 소유 아님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② 정당 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 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 소유로 간주함.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IV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8.22.(월) (‘청약Home’ 홈페이지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한정)
일반공급	1순위	2022.08.23.(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순위	2022.08.24.(수)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Home’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에서는 청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 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 신청」⇒「APT 청약 신청」⇒「Step 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 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 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확인 방식

	<p>(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약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 ②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①, 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인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하는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인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인증서류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부여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 가점제, 나머지 60% 추첨제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순군 거주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화순모아엘가.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시 청약에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방문 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

당첨자발표

당첨자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8.30. (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기관(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 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 가능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점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점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점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점자 발표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2.08.30.(화) ~ 2022.09.08.(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공일시	2022.08.3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Home' > 청약 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2022.09.01.(목)~2022.09.08.(목) 10:00~16:00까지	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 주택전시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74-1)

- 예비입주자(특별/일반)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턴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사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거주지역,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당첨자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정당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1.)**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 기간 내(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 발급용)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단신부임 입증서류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무주택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전시관비치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가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다자녀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세대 구성 판단시 직계존속의 최근 3년 이내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	출생관련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기간 및 혼인일 확인 "상세"로 발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2021.01.01.부터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비사업자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에 비치)

	○	출생관련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소득세 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 등)		• 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2021.01.01.부터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생관련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노부모부양으로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포함)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	당첨 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세대원 전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 지급 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 등기부 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 지급 조서)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 지급 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확인각서 (당사 주택전사관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주택전사관

- 상기외 소득증빙 서류 및 방법
 - 군복무중인경우: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공급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서류 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 증명서 (직인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해당 직장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국내 거주기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알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공인 자격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가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단신부임 입증서류		
○		복무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알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가점제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알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알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부적격 통보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받은 자 (소명자료)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	당첨 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전체),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Ⅶ 계약체결 안내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2022.09.14.(수) ~ 2022.09.16.(금) 10:00~16:00	화순센터 모아엘가 트레뷰 주택전시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74-1번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 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438969	주택도시보증공사광주전남지사 (주)하나자산신탁

자금관리사 (주)하나자산신탁,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주체를 대리하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 공급계약상 공급금액을 수납하고 집행할 뿐 자금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사업주체의 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공급금액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후 주택전시관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포함)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격확인 서류 제출 후 인감도장이 변경된 경우 /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 발급용) • 사업주체 보관
	○		신분증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		
	○		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확인 서류 제출 후 추가 요청 받은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 비치
	○		위임장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이후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 (주택전시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대출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화순군은 비투기과열지구, 비투기지역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금액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차, 2차)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 규제 대상자는 공급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 및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대출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자,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Ⅷ

추가선택품목 계약 관련 사항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가전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금액(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 일정, 계약 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 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통보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 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 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시기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3년 1월 20일	입주지정일
84A	25,300,000	2,530,000	2,530,000	20,240,000
84B	25,300,000	2,530,000	2,530,000	20,240,000
84C	25,300,000	2,530,000	2,530,000	20,240,000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362483	(주)하나자산신탁(분양수입금계좌)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 계좌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포함)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일부 유무상 추가선택품목 반영)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제품품목 및 내부 인테리어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5.12.02. 개정시행)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 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거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수전과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 창호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 창호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침실 문 사이즈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가구 및 발코니 선반 사이즈 및 위치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커튼박스 깊이 및 폭, 우물천장 깊이 및 폭 등) 및 디자인(커튼박스, 우물천정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 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냉매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마감재 추가선택 제공품목

전타입 공통	현관 중문	안방 드레스룸 중문 (안방방향)	거실 아트월 마감재	주방 상판+벽체 마감재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거실, 주방, 복도 바닥 마감재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세라믹타일	· 세라믹타일	· 드레스룸 벽판넬 마감 + 조명	· 폴리싱 바닥타일
84C타입 특화품목	주방 펜트리 중문		침실2 드레스룸 중문		침실2 드레스룸 고급형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4연동 슬라이딩도어		· 드레스룸 벽판넬 마감 + 조명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현관 중문	안방 드레스룸 중문 (안방방향)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마감	주방 상판+벽체 세라믹타일 마감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거실, 주방, 복도 바닥 폴리싱 바닥타일 마감
84A	1,400,000	1,400,000	1,800,000	4,300,000	4,500,000	9,000,000
84B	1,400,000	1,400,000	2,000,000	4,300,000	4,500,000	9,000,000
84C	1,400,000	1,600,000	2,100,000	4,300,000	4,000,000	9,000,000
84C 타입 특화품목	주방 펜트리 중문		침실2 드레스룸 중문		침실2 드레스룸 고급형	
	1,800,000		2,000,000		2,500,000	

- 강마루 기본품목선택 시 거실+주방+복도+각침실을 포함하여 시공되며, 강마루+폴리싱 바닥타일 선택 시 거실+주방+복도는 폴리싱 바닥타일, 각 침실만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상기 개별 선택품목 중 바닥재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 방법, 시기 및 납부 계좌

구분	계약금 (10%)	잔금 (9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광주은행	1107-021-362483	(주)하나자산신탁(분양수입금계좌)

- 상기 마감재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포함)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 및 공급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84A, 84C	선택1	2대	거실, 안방	4,100,000	LG전자
	선택2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500,000	
84B	선택1	2대	거실, 안방	4,100,000	
	선택2	3대	거실, 안방, 침실1+침실2(가변형 벽채 통합형)	5,900,000	
	선택3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가변형 벽채 분리형)	6,500,000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 설치 가능하며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 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추후 선정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 금액 또는 납부 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 냉매 매립 배관(거실, 안방)이 설치되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미설치 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관람 및 전시 운영을 위해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에 따라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 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 마감공사 전(前)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 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모델명	제조사
84A, 84B	오브제 냉장고	1,650,000	X321GB / 384L	LG전자
	오브제 냉동고	1,850,000	Y320GB / 321L	
	오브제 김치냉장고	1,850,000	Z320GB / 324L	
	인덕션 쿡탑	950,000	CEN-IF3AONBA	쿠첸
	의류관리기	1,380,000	S3RF	LG전자
84C	오브제 냉장고	3,200,000	M623GBB052 / 610L	LG전자
	오브제 김치냉장고	2,900,000	Z491GBB151 / 491L	
	인덕션 쿡탑	950,000	CEN-IF3AONBA	쿠첸
	의류관리기	1,380,000	S3RF	LG전자
전타입 공통	스마트 복합 환풍기	700,000	FHD-P150S1	힘펠

- 상기 기타 가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 금액 또는 납부 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동고,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에 따라 냉장고장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쿡탑 설치 시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전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 방법, 시기 및 납부 계좌

구분	계약금 (10%)	잔금 (9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가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광주은행	1107-021-362483	(주)하나자산신탁(분양수입금계좌)

- 가전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납부 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포함)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 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일자 및 조건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은 사업주체, 시공사, 개별업체와 고객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2021.01.21일)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추가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는 제시된 제품의 품목, 사양 등의 충분한 설명 및 확인을 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일 가격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 및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단지 초등학교 배치는 현 통학구역(화순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중·고등학교 학생은 기존 학교군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 공사·타일 공사·주방 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입주 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측정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미만 단지로 최소 45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 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구분	등급
중요도(1)	VII-0.204g

※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I~VII)으로 표기

지하주차장 높이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 : 지하1층 - 2.7M / 지하2 ~ 지하4층 - 2.3M 확보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2-101-0006800 호	95,163,390,000 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X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 사업은 2022년 02월에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화순모아엘가.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준공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 상가 지붕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사인물 포함),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로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여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 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대지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입주 및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설계 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에 계약 이후 아래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유의사항	• 단지 내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공원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 토목공사 중 포장시공은 홍보 분양물이나 조감도와 상이하게 형태와 색상 및 위치가 변경 시공이 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4개층으로 구성되며, 지반과 접하여 지하층이 계획되는 곳은 습기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의거 각 세대 E/V홀에 제연설비는 시공 되지 않음. (도면 E/V홀에 제연 덕트 시공됨)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 및 단지모형 상의 물딩 형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시공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향후 인허가관청의 협의 과정에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위는 주변 도로의 레벨 차이에 따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사면 도로부지 및 학교부지는 당 사업부지와 단차가 발생하여 단지 내측으로 일부 옹벽이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위의 도로 레벨에 의해 일부 근린생활시설과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아파트 입주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어떠한 변경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문주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집기류는 제외됨.	
• 사업부지의 측량좌표로 인해 대지면적변경이 될 수 있음.	
• 전기공급지점 및 상수도 인입지점이 변경 될 수 있음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불편 우려 사항	• 주변 개설기부채납도로 및 기존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위치는 실 시공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법적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고층 또는 일부세대 입주시 이웃집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여야 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과 보행자에 의한 소음, 사생활침해 등으로 거주 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지상1층에 경로당, 어린이집 / 지상2층에 관리사무소, 휘트니스센터가 있음. 상부 세대에는 이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어린이 놀이터와 면한 일부 세대의 경우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의 영향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관련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전라남도청 및 화순군청 등 지자체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하며, 건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당해 지구관련 교육시설의 설립, 학생수용계획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여건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에 준주거, 단독주택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병원시설 가스정압시설,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2개면(남,서측)에 도로가 있으며 1개면(동측)에 화순시외버스공용정류장이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주변 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닙니다.(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에 상업/업무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주변 현황으로 남측 및 서측은 35~40M 도로, 동측은 화순시외버스공용정류장이 위치하며, 청약 및 계약 전 주변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초등학교 배치는 현 통학구역(화순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중·고등학교 학생은 기존 학교군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 주변 개발에 따라 증가학생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증축을 할 수 있으며, 학교 시설 증축 및 학생 배정은 관할 교육청 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합니다. · 교육부의 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설립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주변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부 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1~32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평지붕(다락방구간 경사지붕)으로 옥탑부 장식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설치됩니다.
	· 단지 인접부 도로시설 또는 주변 시설물과 단지내 고저차로 인해 일부 지하 외벽 또는 용벽이 노출되는 부위가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은 주변 레벨보다 낮거나 높게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층을 통해 지하층,지상1층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전체동 및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 주차장 사용 차량으로 인하여 전체동 및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음.
	· 단지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층세대는 상가로 인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가 될 수 있음.
	· 도로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진동,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와 대지주변과의 레벨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채광, 생활환경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단지내에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주차구획이 있으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함.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아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연출용 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연출용 품목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기, 콘센트 및 가전제품, 기타 전기 제품은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냉난방용으로 설치 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적용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주변 조성계획 등은 본 사업지와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인허가관청 변경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단지모형의 단지 내 표현되는 조경 및 조경시설물, 단지 도로 선형 및 마감 색상 및 재질은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카달로그 및 홍보인쇄물	· 카달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본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로고사인 위치, 외벽 마감 식재 및 포장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최종 사업계획 내용, 법규 변경, 시공 시 현장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 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 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주변현황	공원	단지 0.5km 내에 남산공원이 위치해 있음.
	도로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2개면(남,서쪽)에 35~40M 도로가 있어, 도로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공동주택)는 서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오피스텔상가)는 남측에, 단지지상출입구(보행자,비상차량)는 동측에 위치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차량진출입	공동주택 차량진입은 서측에, 오피스텔 및 상가 차량진입은 남측에 차량출입구 통해서 진입 가능함.
	학교	화순초등학교 배정 예정임.
공통	단지주변	남측 및 서측은 폭35~40M 도로, 동측은 화순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 후 소음 발생 및 일조, 조망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통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자전거 보관소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DA와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DA위치는 지하층 헬륨실 배치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소방비상차 구획에 활용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구 주변은 소음 및 진동 발생 우려가 있음.
		단지 출입구 문주, 경비실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야간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공간에 근로자휴게소(남,녀 탈의실), 재활용보관소, 창고, 저수조, 소화수조/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헬륨, 정화조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 우려가 있음.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근린생활시설 주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 우려가 있음	
	제연헬륨 및 지하주차장 환기헬륨	제연헬륨은 101동 지하1층에 설치예정임 / 지상층에 아파트 제연헬륨의 그릴이 설치되므로 소음&진동 발생 염려가 있음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헬륨의 그릴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발생 우려가 있음. - 환기헬륨은 지하4~지하1층에 설치됨 / 환기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지상층에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의 환기헬륨의 그릴이, 설치예정으로 소음 진동 등 발생 우려가 있음. - 환기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남측도로 전면부(지하주차장 출입구(오피스텔 및 상가))우측구간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하주차장에 상가+오피스텔 주차장(54대)이 주차구획 있으나, 공동사용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	
	상가 내부의 기둥은 내력기둥으로, 구조계획(내진설계반영)에 따라 시공상 변경이 불가함.	
	지하1층에 경로당, 어린이집 / 지상2층에 관리사무소, 휘트니스센터가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일부계획(평면, 면적,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시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지하주차장 층수는 지하1층에서 지하4층까지임(지하 4개층). / 지하주차장 천정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통합주차장임.	
	지하주차장 출입구(공동주택)는 서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오피스텔상가)는 남측에, 위치되며, 근처 주동 저층부 세대에 차량조명 및 소음&진동이 발생 될 우려가 있음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각동 1개소이상 소방 전용주차 구획이 표기될 수 있음(상기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차램프	101동 하단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며, 근처 주동 저층부 세대에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 발생우려가 있음. 일부세대 저층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출입구	주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지상출입구(보행자,비상차량)는 동측에 있음. / 일부세대 저층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외관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층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색채계획 및 옥외 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각동 측벽 1~3층 및 주동 주출입구- 석재마감 계획이며 그 외, 3층이상부터는 외부수성페인트 마감 예정됨.	
주동	101동	남동측면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어, 환경권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남동측면에 1층 지상로터리가 있어, 환경권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서측에 지하주차장 (아파트) 차량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동 주변 남측으로 소방차 전용구간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1층에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층 남측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오피스텔&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1층 북동쪽면으로 소방차 전용구간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동측면쪽에 단지지상출입구(보행자 및 비상차량)가 위치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북측면쪽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어, 환경권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서측면쪽에 소방차 전용구간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공통	아파트 E/V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수 있음.
		E/V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구성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현관전면에 E/V, 계단, 복도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함.
		최상층세대는 ELEV.기계실로 인해 소음&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설치(실외기실)되며, 이로 인해 에어컨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매립 설치됨.-(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미적용)
		각 세대 발코니에는 발코니 선홈통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선반)의 배치가 변경되거나 소음이 발생할수 있으며, 발코니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석재, 마루 등 천연소재의 자재인 경우 천연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강마루, 타일 도배등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에 따른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수 있음		
* 조감도 투시도등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배치도(CG,모형)의 단지내외부 도로선형, 녹지구간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주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 등 공용 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설비(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세대/디자인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 프레임 두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홍보물 및 모델하우스 모형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세대별,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②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상·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환기 노출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계량기, 세대통합 통신 단자함,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현관, 발코니(다용도실포함),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설비도면상 욕실 난방코킹 시공 안됨)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욕실의 바닥 배수구 형태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단차(발코니 포함)는 물 구매 및 시공성으로 인해 위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 높이는 물막이턱 기능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임.(SMC 천정재)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이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환경권	·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 침해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지하층의 환기, 채광, 소방, 이동을 위한 각종 시설물(DA, TOP-LIGHT, 계단실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실·전기실·제연 급배기구, DRY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공동주택 기계실 포함 저수조, 발전기실, 전기실, 정화조, 우수저류조 등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에는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 동 앞뒤로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조환경과 관련하여 동지일 기준 오전8시~오후4시 사이 8시간동안 일조시간 누적4시간 이상 또는 오전9시~오후3시 사이 6시간동안 2시간이상 연속일조를 받는지 여부는 설계도면과 함께 분양사무실 및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 에 따른 지하주차장 차로통행 높이 2.7M 이상 해당사항 없음 - [지상 비상차로로 일반 차량통행가능]
외부환경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시 홍보물 상의 조감도와 배치도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색채, 마감재, 축벽그래픽(문양)은 인허가, 색채 심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시설물(외부 엘리베이터, 외부계단,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재활용 집하장, DA, TOP Light 등)의 위치, 개소,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외관은 입면분할창으로 되어있으며, 소음 및 환기 등의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옥탑부디자인, 주동 및 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등은 인허가 과정 및 본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인허가기관의 계획에 의해 추후 인허가관청에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관계로 외부색채 및 옥탑디자인 등 외부 환경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지정석재마감은 지상3층까지이며, 4층이상 외부용수성페인트 마감임. · 단지내 레벨차로 인한 옹벽 및 사면구간 형성으로,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각종 인증절차에 따라 단지 구조물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일부 도로는 보 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구조물의 형태는 추후 시공성 및 품질 개선의 일환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외부 색채 디자인도 모형 및 컴퓨터그래픽에 표현된 내용과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 호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골드이엔지	태연엔지니어링(주)	태연엔지니어링(주)
금 액	₩1,577,392,300원	₩543,400,000원	₩31,680,000	₩38,72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 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모성기업	주식회사 오케이제이	모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 소	광주광역시 회재로 908, 2층(풍암동)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벽진길 124(금호동)	광주광역시 서구 윤천로 273, 4층(치평동)
법인등록번호	2000111-0456165	200111-0413454	200111-0453608

[기타사항]

- 본 단지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와 계약한 당사자 외에는 계약사항에 관련한 어떠한 정보 및 상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자의 위임장 첨부 및 대리인 선임 시 가능)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 화순모아엘가.com
- 주택전시관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74-1
- 분양 문의 : 061-375-5557